

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: 경상북도 기획조정실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년 4월 12일, 경상북도지사

나. 회부일자: 2024년 4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

- 2024년 4월 24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: 정책기획관 유정근

나. 제안이유

○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

다. 주요내용

○ 상위법(지방세법) 인용조문을 개정하고, 상위법 개정사항

반영 및 조문의 명확화(안 제7조 및 안 제18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영두)

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세법」의 개정('23.12.29) 및 시행('24.1.1)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7조(과점주주의 신고)는 「지방세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과 조문 중 일부 단어를 개정하는 것임.
- 안 제18조(과세표준과 세율)는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과 조문 중 일부 단어를 개정하는 것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과 일부 단어를 개정하는 것으로서, 법령의 개정시기에 맞추어 시의성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
6. 토론 요지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